

# 교수학습센터운영위원회 규정

- 제정 : 2012. 6. 29.
- 개정 : 2013. 10. 29.
- 개정 : 2019. 11. 29.
- 개정 : 2020. 3. 13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 교수학습센터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: 2020.3.13.>

**제2조(구성)**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장은 교수학습센터장이 된다.<개정 : 2020.3.13.>

**제3조(임기)**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**제4조(위원장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5조(회의 및 의결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위원의 2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6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.<개정 : 2020.3.13.>

1. 교수학습센터의 기본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
2. 교수학습센터의 제반 업무활동에 관한 사항
3. 교수학습센터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
4. 교수학습센터 운영 및 추진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
5. 기타 교수학습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
**제7조(간사)**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.

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3-0-4 교수학습센터운영위원회 규정

제8조(운영세칙)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·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정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.